

#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6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꿈의대화 캠핑장이 2019년 5월 중 야영장 변경등록 예정으로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」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를 하고자 합니다.

## 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추진

## 3. 주요 내용

- 시설명 : 꿈의대화 캠핑장
- 소재지 :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50-1번지 일원
- 시설규모 : 34면(캐빈하우스 1, 글램핑 8, 황토방하우스 2, 돔텐트 11, 데크 12) / 12,184m<sup>2</sup>
- 위탁기간 : 2019. 6. ~ 2021. 6. (협약일로부터 2년)
- 위탁비 : 10,243천원(예정금액)
- ※ 6월 중 원가계산 후 최종금액 확정예정
- 위탁방법 : 위탁공고(공개모집) ⇒ 평가 ⇒ 심사의결 ⇒ 위탁결정(협약체결)
- 위탁내용 : 꿈의대화 캠핑장 위탁 운영

## 4. 참고 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등
-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

## 민간위탁 관련 법령

###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##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###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
###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

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

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### 제4조(대상사무)

-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  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-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  2. 환경기초시설
  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  4. 공원·녹지시설
  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 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 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  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### 제7조(의회의 동의)

- ① 군수는 제6조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### 제8조(공개모집)

-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(이하 “선정기준”이라 한다), 그 심사항목·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##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### 제9조(선정기준)

-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  1. 인력, 조직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  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 및 공신력
  3.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(종사자의 임금지급, 처우개선 사항등을 포함한다)
  4. 사업계획의 타당성
  5.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-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.

### 제10조(선정방법)

-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·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
### 제11조(선정심의위원회)

- ① 군수는 수탁기관(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는 해당 안전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,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### 제12조(협약체결 등)

-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협약대상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 사항은 공증한다.
1. 민간위탁의 목적
  2. 수탁기관의 명칭(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
  3. 위탁사무의 명칭·범위 및 내용
  4. 위탁기간 및 조건
  5.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
  6.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
  7. 종사자의 고용승계
  8. 이용자·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
  9.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
  10.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,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### 제15조(비용보조·지원 등)

-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6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.
-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보조·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